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105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3월 8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6년 2월 5일 최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의안번호: 980), 2016년 2월 25일 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의안번호: 1046) 이상 2건을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(2016.3.8.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일이 “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”에서 “회계연도가 끝나는 날”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결산의 의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앞당겨지게 되는 바,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운행을 도모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의 업무능력 검증 등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, 인사 청문으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업무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1호).
-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)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6월 20일”을 “6월 10일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 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"총선거"라 한다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 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"총선거"라 한다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6조(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6조(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